



#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 1. 전시자와 주최/주관자** : 전시자는 해당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최하는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주관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관하는 인천관광공사, 리드케이웨어를 말한다
- 2. 계약의 우선** : 본 계약 이전에 구두나 다른 문서로 쌍방이 합의했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한 경우, 본 계약이 이를 대체하며 주최/주관자가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수정될 수 없다.
- 3. 전시자 서명 및 대리행위** : 주최/주관자는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전시자의 대리인 권한을 받고 이에 따른다. 단, 전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전시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주최/주관자가 그에게 전시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시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 4. 권리** : 계약 금액 전액을 지불한 후 전시자는 전시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전시자는 해당 권리는 전시자가 홍보나 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해당 공간에 대한 임대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
- 5. 배정** : 전시회 배정과 관련된 주최/주관자의 결정은 전시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주최/주관자는 참가실적, 부스규모, 신청순서, 참가비 완납 순서, 전시물 특성 및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성을 감안하여 전시자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전시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전시회 배정에 관한 주최/주관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전시자는 배정된 전체 부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주최/주관자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 6. 출품 품목** :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물을 전시하고, 주최/주관자는 전시물이 명시된 것과 상이하거나 전시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출품품목을 제한하거나 전시자에게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물품,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전시나 광고에 적합하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주최/주관자가 갖는다. 또한, 주최/주관자는 단일부스에서 전시자의 출품품목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 7. 보증** : 전시자는 제3자의 대리인이나 지명된 자가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전시물이나 제품, 광고가 타인의 특허, 상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증하고 책임진다. 전시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표시, 보증, 책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며 전시자는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 8. 설치 및 철거** : 전시물의 설치 및 철거는 주최/주관자가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설치 및 철거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끼친 손해에 대해 주관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9. 지불 조건** : 전시자는 주최/주관자가 안내하거나 견적서나 인보이스에 기재된 지불 조항이나 지불 방법에 따라 전시회 참가비를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전시자가 지정된 분할 납부 기한 이후에 계약하는 경우, 당해 지불액을 포함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분할 납부 금액을 일시 지불한다.
- 10. 지불 지체** : 전시자가 납부기한 내에 견적서나 인보이스에 명시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율 6%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불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영 비용과 징수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 11. 참가 취소** : 전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시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및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주최/주관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전시자의 취소 결정에 따른 주최/주관자의 실제 영업손실이나 발생 비용의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기회비용이 큰 본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자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이다.
- 12. 전시자의 책임** : 전시자는 주최/주관자와 그의 대리인이 구두로 전달한 사항이나 문서나 전시자 매뉴얼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시자는 규정의 미준수나 계약서 조항의 위반 혹은 태만의 결과로, 주최/주관자와 그의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시자는 전시물의 위험성을 책임지고 배치하며, 전시물의 도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13. 안전, 화재, 보건, 기타 법률** : 전시자는 주최/주관자 또는 해당 지역 부처와 기관, 해당 전시장이 정한 모든 화재, 안전, 보건 및 기타 법률, 규칙,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물 및 부스와 관련된 안전 기준을 항상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 14. 금지된 전시물** : 군수품, 항공 무기, 소화기 탄약 및 폭발물, 무기 계통, 전술 미사일, 로켓, 칼 또는 전술 장비 등을 포함해 군사 장비를 전시 시설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주최/주관자는 전시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다른 종류의 전시물에 대해서도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전시자는 전시물과 전시회 참여에 대하여 정부와 기타 규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승인을 전시회 일자에 앞서 확보하고 전시회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 15. 손실** : 주최/주관자는 본인의 귀책 아닌 사유로 야기된 전시자의 재산 손실이나 반입 또는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분실 또는 금전적 비용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전시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의 재산의 손실 및 금전적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전체 계약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16. 변경** : 주최/주관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전시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변경을 할 수 있다. 주최/주관자의 판단에 따라 배정된 전시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시장, 전시회 일자, 기간 및 방문자 개방 시간을 변경하거나, 전시회 장소를 주요 개최 장소 이외에 별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여러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전시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전시회 변경에 관한 주최/주관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7. 종료/연기

- (a) 주최/주관자의 판단에 따라 전시장 및 관련시설이 전시회 개최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계약 조항을 주최/주관자가 이행하기 어렵거나, 주최/주관자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은 원인으로 전시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 계약 및/또는 전시회는 주최/주관자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거나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에 따라 전시회가 개최된 후 종료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주최/주관자는 잔여 전시 일자의 수에 비례하여 계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단, 불가항력 기타 주최/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종료 또는 취소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전시회를 연기하거나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b) 주최/주관자는 전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최/주관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의 해제는 주최/주관자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8. 책임, 배제, 한계

- (a) 주최/주관자는 주최/주관자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은 원인에 의해 전시자에게 발생한 손실과 비용 및 기타 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본 계약에서 "주최/주관자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은 원인"은 화재, 참사, 홍수, 질병, 감염 위험, 유행병(코로나 바이러스 등), 지진, 폭발이나 사고, 봉쇄, 금지령, 냉혹한 기후, 정부의 제한, 군 당국의 제한이나 명령, 공공의 적의 행위, 폭동이나 민간인 소요 사태나 동란, 테러 행위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 파업, 폐쇄, 보이콧이나 기타 노동 분쟁 또는 소요, 충분한 노동력, 기술 인력 또는 기타 작업자의 확보 불능, 전시회 필요한 시설 부재, 적절한 운송 시설의 장애, 필수적인 장비나 물품의 확보 불가 또는 사법적인 판단이나 법률, 법령, 규칙, 명령, 판결을 포함한다.
- 19. 거절 또는 퇴출** : 주최/주관자는 원활하고 안전한 전시회 진행을 위해, 전시물 전체 또는 일부, 전시자 또는 그와 관련된 자를 거절하거나 퇴출할 수 있다. 주최/주관자는 전시물 또는 전시자(관련자 포함)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여 거절 또는 퇴출될 경우 17.(a)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
- 20. 권리의 양도** : 전시회 참여에 관한 이 권리는 전시자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전시자가 다른 주최/주관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전시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안 된다.
- 21. 방문객** : 주최/주관자는 전시회 방문자 수나 기타 상업적 활동 수준을 보증하지 않으며, 다만 온라인 방문자와 현장 방문자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 22. 전시자 매뉴얼 및 전시 공간 계획** : 전시회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칙과 규정은 주최/주관자가 제공하는 전시자 매뉴얼과 기타 문서를 참조한다. 주최/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회와 관련하여 추가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즉시 시행). 이와 같은 규칙과 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최/주관자가 전시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전시자에게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
- 23. 부분적 무효** :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조항의 유효성과 시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4. 개정 조항** : 본 계약은 주최/주관자가 지정한 형식의 문서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 25. 준거법률 및 분쟁 해결** : 본 계약은 주최/주관자가 법인을 설립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판결에 따라야 하며, 당해 중재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 26. 부가기치세** : 전시자는 견적서나 인보이스의 기재에 따라 10%의 부가기치세를 주최/주관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단, 전시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계약 금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등 부가기치세 및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가기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본 규정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규정입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전시자는 주최/주관자로부터 계약의 일부분인 해당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 (인보이스를 포함하여, 이하 "본 계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이를 읽고 이해하고 수용함에 동의한다.

계약일자:

계약담당자:

(인)

대표:

(인)